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1
----------	------

제출년월일 : 2005.11. 1.
제 출 자 : 김 용 의원외 7인

개정이유

-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지원대상을 하자보증기간이 종료 후 3년이 경과 후에 적용한다는 것에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확대시킴. (조례 제2조 일부개정).
- 나. 사업은 시에서 이를 직접 시행하는 것을 삭제하고 보조금 신청으로 변경. (조례 제3조제3항 삭제).
- 다. 보조금 목적 외 금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함. (안 제8조 신설).

개정조례안 : 별 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주택법 제43조 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의견없음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지원대상) 중 “하자보증기간이 종료 후 3년이 경과 후에 적용 한다. 다만,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원대상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원을 받은 단지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절차)”를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지원신청 ”을 “보조금 신청”으로 하며,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보조금 교부 및 보조금 규모”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안산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사업착수) ①시장으로부터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대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유지보수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 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보조금을 교부 받을 대표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

②제1항 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준다.

제8조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대표자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고, <u>하자보증기간이 종료 후 3년이 경과 후에 적용한다.</u> 다만,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판정되어 3년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p>	<p>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고, <u>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적용한다.</u>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p>
<p>제3조 (지원범위) ①(생략) ②이 조례에 의한 <u>지원대상</u>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5.(생략) ③사업은 시에서 이를 직접 시행한다.</p>	<p>제3조 (지원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이 조례에 의한 <u>보조</u>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5.(현행과 같음) ③지원을 받은 단지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p>
<p>제4조 (지원절차) ①~②(생략) ③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u>지원 신청</u>이 있는 경우 안산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u>를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u>보조금 신청</u>이 있는 경우 안산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보조금 교부 및 보조금 규모</u>를 결정한다. ④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안산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⑤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u>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p>제6조 (사업착수) ①시장으로부터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관하여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유지보수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u><신 설></u>	<p>제7조 (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 <p>②제1항 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준다.</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u> ①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대표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p><u><신 설></u></p>	<p><u>제9조 (준용)</u>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산시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p><u><신 설></u></p>	<p><u>제10조 (시행규칙)</u>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01
----------	------

제안년월일 : 2005. 11. 9.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을 하자보증기간이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토록 하고, 보조금을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하는 시행규칙을 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가. 지원대상을 하자보증기간이 종료 후 3년이 경과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보조금을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2조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적용한다”를 “하자보증기간이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고, <u>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적용한다.</u>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p>	<p>제2조 (지원대상) ----- ----- ----- ----- ----- -----, <u>하자보증기간이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u> ----- -----.</p>
<p>제3조 (지원의 범위) ①이 조례에 의한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당 35,00천원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p>	<p>제3조 (지원의 범위) ①----- ----- -----. 다만, <u>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u> ②~③ (원안과 같음)</p>